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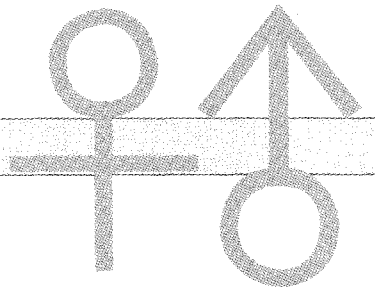
이 동 식 / KBS-TV 편집주간

‘동성애는 유해하지 않다’

마침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 등이 지난해 말 낸 진정에 대한 심사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인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조항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즉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4개 심의기관에도 인권위의 권고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글머리에 ‘마침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로써 동성애가 더 이상 이상한 성관계가 아니라 개인들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 전까지 동성애 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표면적으로 본다면 탤런트 홍석천 씨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한 이후 각종 프로그램에서 퇴출됐던 2000년 10월을 기점으로 보면 약 2년 반만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홍석천 씨가 출연정지를 당하던 당시 일부 언론들에서 왜 출연정지를 시켜야 하는가 하고 항변하기도 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 언론들의 반응이 너무도 담담한 것을 보면 그 사이 사회가 변하기는 많이도 변한 것 같다. 적어도 자기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주변이 아니라면 굳이 알기알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어느새 형성된 것이 아닐까?

사실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도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기에, 결혼한 남녀가 어떠한 사랑을 나누든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동성끼리의 육체적인 관계나 행위도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이뤄진다면, 그들이 강도나 상해 등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우리가 굳이 문제삼기가 곤란하다. 바로 개인의 선택문제일 뿐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적어도 연애는 남자와 여자사이에 하는 것이며, 그 이성이 만나서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그리고 애를 낳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이른바 음양의 인간관, 세계관을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굳게 지켜왔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이후에 굳어진 것이

며, 그 이전에는 비록 합법화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동성애가 은밀하고도 꽤나 넓게 행해져 왔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라는 차원일 뿐이지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당당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현행 법아래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데까지는 아직 길이 멀다. 동성애가 상당히 보편화돼 있는 서유럽의 경우에도 이들의 행위를 인정은 하되, 결혼 등 제도상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판단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지만, 동성애를 권장한다는 차원은 아니므로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번 인권위 판단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소년들의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 동성애를 쉽게 접해도 좋은 것으로 이해하는 결과를 불러올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동성애를 인간의 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들은 동성애가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 같다. PPKK